

#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6. . .  
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4조제2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힐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문구 수정

- 당 초: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 의견 청취할 수 있다.
- 변 경: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할 수 있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3조(생 략)	제1조 ~ 제3조(제정안과 같음)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 ----- ----- <u>해야 한다.</u>
제5조 ~ 제9조(생 략)	제5조 ~ 제9조(제정안과 같음)

##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

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중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